

서울특별시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9. 23.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 9. 5.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22. 9. 13.
- 다. 상정일자 : 제25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2022. 9. 23.)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복지정책과장

가.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에 따라 긴급복지 위기사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를 규정하도록 위임한 근거 조항을 변경함

나. 주요내용

- 1)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으로 위임근거 조항 ‘제2조의제6호’에서 ‘제2조의제8호’로 변경
- 2) 불필요한 조항 삭제 및 근거 법조항 구체화(제2조, 제5조, 제4조)
 - 제2조, 제5조: 상위법령 반복내용 삭제
 - 제4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대한 근거 ‘제12조제4항’ 명시
- 3) 용어 및 표현 정리(제3조)

3. 검토보고 (김동원 전문위원)

- 본 개정조례안은 2022. 9. 5.마포구청장으로부터 의안번호 22-78호로 제출되어, 2022. 9. 13.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 개정 연유를 살펴보면, 상위법령인 「긴급복지지원법」개정으로 이에 맞게 조문을 수정, 삭제 및 용어를 정리하고자 하였음.
- 동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의 목적 내용 변경과 상위법령 반복내용 삭제에 따라 안 제2조 용어의 정의를 삭제하고, 안 제4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규정을 구체화 및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용어로 변경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상위법령인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에 따라 긴급복지 위기사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를 규정하도록 위임한 근거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조문의 내용을 수정, 삭제, 구체화 등에 대하여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 사료됨.

[참고자료]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1. 18., 2012. 10. 22., 2014. 12. 30., 2018. 12. 11.>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급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문개정 2009. 5. 28.]

제12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 7. 24.>

1. 제10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연장 결정
2. 제14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 이상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해당 시·군·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4. 해당 시·군·구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④ 시·군·구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